고소장([죄명])

고 소 인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피고소인 [이름 또는 성명불상](주민등록번호 [불상])

[주소 또는 주소 불상]

전화번호 [연락처 또는 불상]

기타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

죄 명 [죄명][형법 제○조 제○항]

[설명]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성명불상', '주소 불상'이라고 기재하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기타' 줄에 기재합니다. 죄명 뒤 대괄호에는 적용 조문을 기재하고, 여러 죄를 고소하면 '① [죄명], ② [죄명]'처럼 나누어 기재합니다.

[설명]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죄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명]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처벌을 구하는 뜻을 분명히 기재합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관계 또는 피고소인의 지위]이다.

피고소인은 [2026. ○. ○.] [○○:○○경]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였는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죄명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리한 행위]하였다.

[설명]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공소장의 문체('...하였다')로 기재합니다. 확인되지 아니한 일시나 방법은 '[2026. ○.]경', '불상의 방법으로'라고 기

재합니다. 같은 방법의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으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6. ○. ○.]부터 [2026. ○. ○.]까지 합계 [○]회에 걸쳐'라고 기재하고 각 행위는 별지에 정리합니다.

[판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고소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은 [고소인을 설명하는 사항]하는 자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관계 또는 피고소인의 지위]입니다(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이 사건의 경위

가. [사건의 내용]([2026. ○. ○.])

[피고소인 또는 고소인]은 [2026. ○. ○.]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증거의 명칭]).

나. [사건의 내용]([2026. ○. ○.])

[피고소인 또는 고소인]은 [2026. ○. ○.]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증거의 명칭]).

[설명] 경위는 날짜순으로 소제목을 나누고 소제목에 날짜를 기재합니다. 사실마다 문장 끝 괄호에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번호와 명칭을 기재하고, 증거 번호는 본문에서 처음 인용하는 순서대로 매깁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사실은 문장에서 구분합니다.

3. 피고소인의 죄책

가. 관련 법리

[법령] 제○조 제○항은 [구성요건]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 ○.] 선고 [사건번호] 판결).

"[판결 이유의 원문]"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소인은

① [2026. ○. ○.] [행위]하였고,

② [2026. ○. ○.] [행위]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위 행위는 [죄명]죄에 해당합니다.

[설명] 죄책은 조문과 판례(관련 법리), 이 사건의 사실(이 사건에의 적용), 결론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판례는 요약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뒤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여러 죄를 고소하면 죄명마다 이 항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4. 피고소인의 예상 변명에 대한 반박

피고소인은 [예상되는 변명]이라고 변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명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 [변명과 어긋나는 객관적 사실](증 제○호증).

2) [변명과 어긋나는 객관적 사실](증 제○호증).

[설명] 피고소인이 내세울 변명을 미리 상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답합니다. 예상되는 변명이 없으면 이 항을 삭제하고 뒤의 번호를 앞당깁니다.

5. 수사 요망 사항

①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확인,

② [확보가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설명] 고소인이 직접 구할 수 없는 자료(금융거래내역,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CCTV 영상 등)는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앞 번호에 기재합니다.

6. 결어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는 [죄명]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증 제1호증 [증거의 명칭]

1. 증 제2호증의 1, 2 [증거의 명칭]

1. 증 제3호증 [증거의 명칭]【발급 후 제출】

[설명] 같은 종류의 증거가 여럿이면 '증 제2호증의 1, 2'처럼 가지번호를 붙입니다. 아직 발급받지 못한 증거는 명칭 뒤에 '【발급 후 제출】'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별지 범죄일람표 1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며, 만일 허위 사실을 고소한 때에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설명]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단정하지 아니하고 '...으로 추정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판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2026. ○. ○.]

고소인 [이름] (인)

[○○]경찰서장 귀중

[설명]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행위	피해	증거
1	[2026. ○. ○.]	[장소]	[행위]	[피해의 내용 또는 금액]	증 제○호증
2	[2026. ○. ○.]	[장소]	[행위]	[피해의 내용 또는 금액]	증 제○호증
합계				[합계]	

[설명] 같은 방법의 행위가 반복되지 아니하였으면 별지와 첨부서류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삭제합니다.

위 서식은 변호사 한동하가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서식은 일반적인 양식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시된 자료와 정보는 게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후의 형사 관련법의 동향과 새로운 판결 및 사회적 합의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